****

준법감시인 심사필 약관-15-273(2015.8.19)

『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』 상품설명서

|  |
| --- |
|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, 『거치식예금약관』, 『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특약』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, 동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|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   ￭ 상 품 명 : 『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』

￭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원리금보장이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을 통하여 효율적 자산운용 기회를

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

2 거래 조건 :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

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

(2015.08.19. 현재, 세전, 연)

|  |  |
| --- | --- |
| 구 분 | 내 용 |
| 가 입 대 상 | 퇴직연금사업자 |
| 가 입 기 간 | 1.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: 6개월, 1년 ~ 5년까지 연단위 가입 가능  2.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: 31일 ~ 5년 이내 만기일 자유로이 지정 |
| 가 입 금 액 | 제한없음 |
| 기 본 상 품 | 정기예금 |
| 적용 이자율 | 예금 신규일 영업점에 고시한 기간별 이자율 적용  ※ 2015.06.09. 현재 제도별 적용 이자율 (단위 : %) 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구 분 | 운용기간 | DB | DC | IRP | |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| 6개월 | 1.66 | 1.66 | 1.66 | |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| 1년 | 1.76 | 1.76 | 1.76 | |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| 2년 | 1.86 | 1.86 | 1.86 | |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| 3년 | 1.97 | 1.97 | 1.97 | |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| 4년 | 2.08 | 2.08 | 2.08 | |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| 5년 | 2.18 | 2.18 | 2.18 | |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| 1개월 이상 | 1.60 | 1.60 | 1.60 | |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| 3개월 이상 | 1.64 | 1.64 | 1.64 | |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| 6개월 이상 | 1.66 | 1.66 | 1.66 | |
| 중 도 해 지  이 자 율 | **1.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적용 이자율**   |  |  | | --- | --- | | 특별중도해지 사유 | 중도해지 이자율 | | □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  □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1)  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 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□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□ 수탁자의 사임  □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계약이전  □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가입자 제도 전환  □ 가입자의 사망  □ 퇴직급여의 연금지급을 위한 하나은행 내 교체매매  □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  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(개인형IRP에 한함)  □ 가입자의 해외이주(개인형IRP에 한함) | □ 계약기간 1년 미만 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이자율  □ 계약기간 1년 이상  ¶경과기간 1년 미만 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자율  ¶경과기간 1년 이상2) 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이자율 | | □ 퇴직연금수수료의 납부 |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객에게 적용된 이 예금의 이자율 | |
| 구 분 | 내 용 |
| 중 도 해 지  이 자 율 | 1)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-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2) 경과기간별 경과년수 : 아래 예시와 같이 산정  예시) 경과기간 1년 이상 ~ 2년 미만인 경우 경과기간별 경과년수는 1년임  **2. 일반 중도해지 이자율**  ① 계약기간 6개월 미만 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| 계약기간 | 1개월 미만 | 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 | 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 | | 중도해지이자율 | 0.1% | 0.5% | 1.0% |   ② 계약기간 6개월 이상 : 중도해지적용 기준금리1) × 총경과기간별 차등률2)  주1) 중도해지적용 기준금리 : 신규(또는 재예치) 당시 고시금리  주2)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경과일수  /계약일수 | 0.1이내 | 0.1초과  ~0.2이내 | 0.2초과  ~0.3이내 | 0.3초과  ~0.4이내 | 0.4초과  ~0.5이내 | 0.5초과  ~0.6이내 | 0.6초과  ~0.7이내 | 0.7초과  ~0.8이내 | 0.8초과  ~0.9이내 | 0.9초과  ~1.0미만 | | 총경과기간별차등률 | 5% | 10% | 15% | 20% | 25% | 30% | 35% | 40% | 45% | 50% |   ※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“0.9초과~1.0미만” 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|
| 만기후 이자율 | 예금의 만기시 자동재예치 되므로 만기후 이자율은 없음 |
| 만기재예치 | 1.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된 금액을 재예치  2. 단, 최초 신규시 자동재예치에 관한 특역을 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재예치  (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은 최초 신규시 자동재예치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에는  1년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으로 자동 재예치) |
| 재예치의 처리 | • 원금과 이자 재예치  • 재예치 횟수 제한 없음  • 재예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 이자율을 재예치일 이자율로 적용  • 동일한 계좌번호 사용 (계좌번호 변경 없음)  (예) 2011.06.01.에 2년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에 가입 하였다면, 예금만기일인 2013.06.01.에  가입기간 2년의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재예치 됨. (\*재예치예금의 신규일 : 2013.06.01. / 만기일  : 2015.06.01.)  • 단,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은 재예치시 계좌번호 변경 |
| 이자지급방식 | 만기일시지급식 |
| 분 할 해 지 | • 만기 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 해지 가능.  • 단,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,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 경우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에는 분할 해지 횟수에서 제외  •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경우 가입자별로 만기 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  해지 가능 |
| 예 금 자  보 호 여 부 |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.  확정급여형(DB) 제도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 \* 용어안내  • 개인형퇴직연금 :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 ·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,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 퇴직연금 제도.  • 확정기여형 : 사용자(기업)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  • 확정급여형 :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 제도 |

3 유의사항 : 본 상품은 퇴직연금 운용 대상 전용상품입니다.

|  |
| --- |
| 이 예금은 하나은행 퇴직연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자세한 상품문의는 고객센터 1599-1111(서비스코드 : 예금상담 01)로 연락 바랍니다.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의소리(080-933-1111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hanabank.com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|